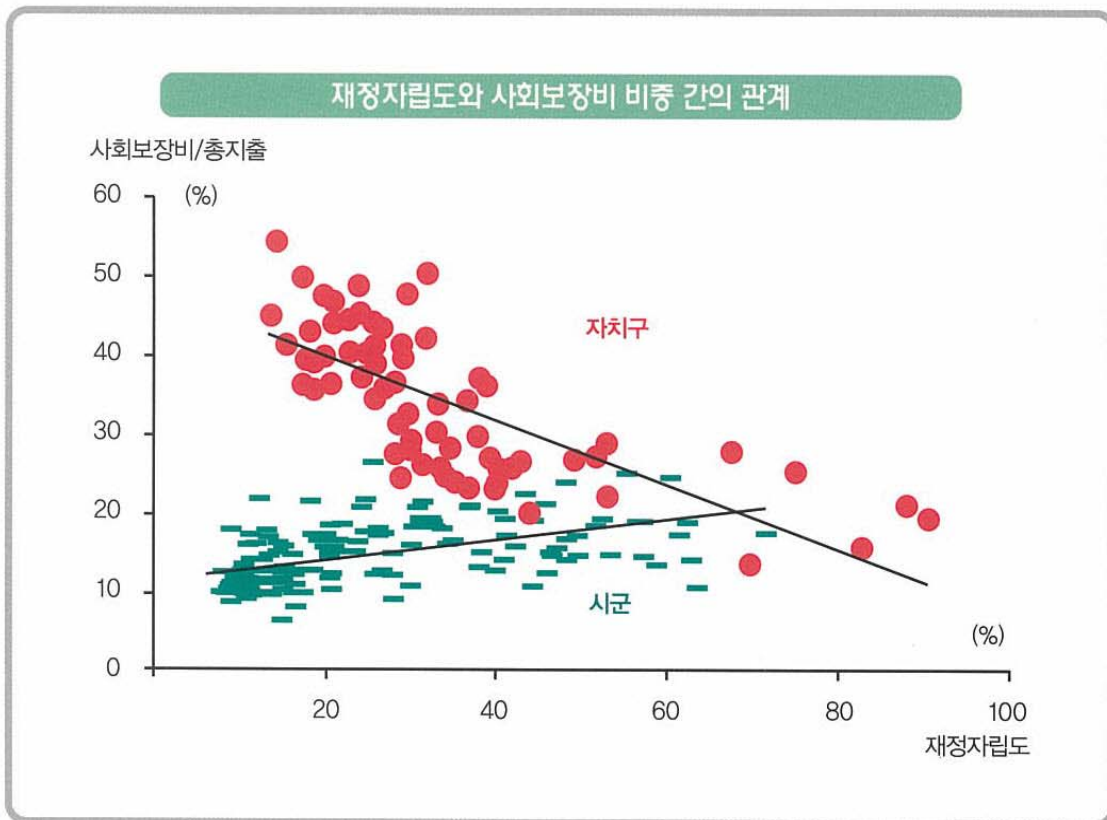




#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심혜정



2009. 12

---

심 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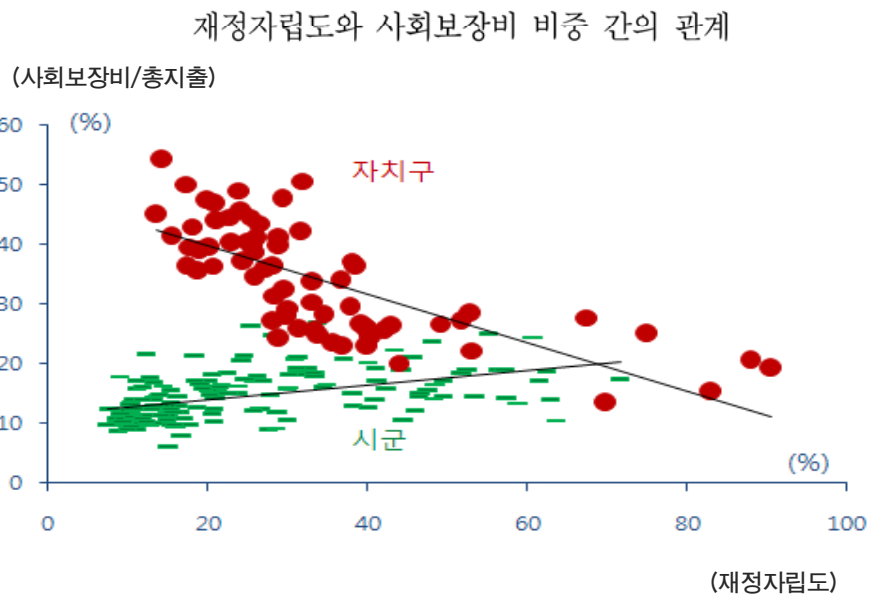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02-788-4747  
hjsim@nabo.go.kr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심혜정



2009. 12.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요 약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최근 사회복지 분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도 증대
  -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은 9.5%('02) → 15.4%('07)로 확대
  -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실시(2004년)
  
- 사회복지 분야 확대 및 지방이양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 및 문제점 제기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관리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 등
  -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 제기
  
-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의 지속적 확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
  
- 또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 정부는 금년 말에 종료토록 예정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중(2009. 10)
  
- 향후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 사회복지기능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 도입

-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 결과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9,581억 원)의 지방이양
  - 149개 지방이양사업 중 67개 사업(5,959억 원)이 사회복지관련 사업
- 지방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도입(2005년)
  - 재원은 내국세의 0.94%(2009년 예산 13,328억 원)
  - 2005~2009년 간 한시적 운영 후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

## 3. 사회복지기능 지방이양 및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 2002~2007년간 지방자치단체 세출 중 사회보장비 증가율은 총세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 지방자치단체 총세출 규모는 연평균 4.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4.9% 증가
  - 같은 기간 중 경제개발비는 연평균 -1.1% 감소
  -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총세출 비중은 9.5%('02) → 15.4%('07)로 확대  
경제개발비/총세출 비중은 33.5%('02) → 25.7%('07)로 하락
- 사회복지 예산 중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더 크게 증가
  -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14.0% 증가
  -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연평균 19.4% 증가
-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도 상승되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더욱 크게 상승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30.2%('02~'04) → 31.8%('05~'07)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53.4%('02~'04) → 65.5%('05~'07)
-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증가율을 상당 폭 상회 →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지방 재정 여력 위축
- 2002~2007년간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연평균 증가율 8.5%
    - 가용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교부금) - 경직성 경비(일반행정비 +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 경비)
  - 사회보장비 지방비 부담액 연평균 증가율 17.4%

#### 4.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간의 관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실증분석 결과,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 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상관관계 더욱 확대
    -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자가 밀집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반면 시·군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치구에 비해 낮은데다 자치단체 간 편차가 현재까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향후 고령화 진전 및 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시·군 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상

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노령인구수 비중이 높고 도시-농촌 간 고령화율 격차 확대 추세 감안

## 5. 결론 및 시사점

- 사회복지기능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
  -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상당 폭 상회
  -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
    - 2002 ~ 2007년 지방비 부담비율 상승 폭(%p) : 11.2(지방이양사업) 2.0(국고보조사업)
    -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추어 산정한데 기인
-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시·군에 비해 크게 증가
  - 인구분포 및 구성의 특성 상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시·군에 비해 매우 큰 편
    -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으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 집중
    - 사회보장비/가용재원 비율(%) : 78.0(서울시 자치구) 148.0(광역시 자치구) 34.0(시) 28.5(군)
-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

음을 해소하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복지수요 증가속도 대비 가용재원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지자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
  -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
-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복지지출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편중된 데 주된 원인
- 시·군의 경우에는 향후 고령화 진전,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 본격화될 경우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관계가 커질 전망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간 고령화율과 산업발전의 격차 확대 추세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노령인구수 비중이 높음

□ 향후 사회복지 분야 지속적 확대에 따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

□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은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
-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



-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지방간 역할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양방식을 재설정할 필요
    -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중앙의 관리와 통제가 그다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재구성
    - 저소득층, 장애인 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재배분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으로 이전

# 목 차

요 약 / iii

I. 서론 / 1

II. 중앙-지방 간 보조금의 분류 / 3

- 1. 중앙-지방간 보조금의 역할 및 분류 ..... 3
- 2.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원제도 현황 ..... 4
- 3. 분권교부세의 도입배경 및 내용 ..... 5

III. 사회보장비 확대와 지방재정부담 / 8

- 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개관 ..... 8
- 2.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 9

IV. 실증분석 / 12

- 1.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 ..... 12
- 2. 자치단체별 사회보장지출 수요지표와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 19
- 3. 실증분석 결과 종합 ..... 22

V. 주요 사례 분석 / 26

VI. 결론 / 29

참고문헌 / 33

부 록 / 34

##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요(2009) .....	5
[표 2] 국고보조금 정비기준 .....	6
[표 3]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	7
[표 4] 지자체 기능별 세출 .....	8
[표 5] 지자체 사회보장지출 현황 .....	9
[표 6] 사회보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사회복지예산 대비) .....	10
[표 7] 사회보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가용재원 대비) .....	11
[표 8]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 .....	14
[표 9] 회귀분석 결과 .....	17
[표 10]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자치구) .....	18
[표 11]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의 상관관계 ....	19
[표 12]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의 상관관계 .....	20
[표 13]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영유아수 비중의 상관관계 .....	21
[표 14]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수 비중의 상관관계 .....	21
[표 15] 기초생활수급자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	23
[표 16] 지자체 단위별 사회보장비 비중(2007년 결산) .....	23
[표 17] 2004~2007년간 가용재원 증가율과 사회보장비 증가율 간 격차 .....	24
[표 18]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 .....	27
[표 19]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계속) .....	28

## 그림 목차

[그림 1] 이전재원 분류(OECD 기준) .....	4
[그림 2] 국고보조사업 정비 결과 .....	6
[그림 3]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2004) .....	12
[그림 4]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2007) .....	13
[그림 5]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자치구) .....	14
[그림 6]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시·군) .....	15
[그림 7]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전체) .....	24

# I. 서론

최근 사회보장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원배분의 틀도 과거 개발연대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사회보장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지방분권화의 진전을 전반적인 복지발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의 개념이 과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처럼 전국적인 기반을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지나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로 변화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복지에 대한 개념 변화와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계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와 직접 접해 있어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었던 사회복지 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정비 시 지방이양 추진의 기반이 되었던 논리는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재정분권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역할을 중요시한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주도하였던 정부혁신지방분권회는 ‘여권발급 등 명백한 국가사무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의 역할은 지방정부를 보완하는 측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충성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 분야 투자는 중앙정보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윤희숙(2008)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부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복지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는 변화는 관리체계의 공백을 초래하고 복지부문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2010년 예정)에 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고영선 [2008]). 감사원은 2008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방이양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부족,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역량 미흡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up>1)</sup>. 또 정부는 금년 말로 종료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sup>2)</sup>.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중앙-지방의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개관한다. III장에서는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총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실제 상황과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VI장에서는 앞서 논의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고의 논의가 향후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 확대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2009. 5월 회부)

2)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2009. 10월 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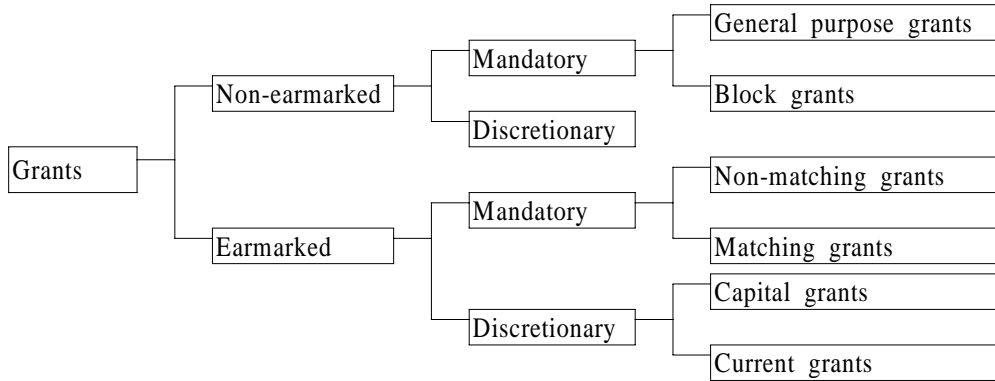
## II. 중앙-지방 간 보조금의 분류

### 1. 중앙-지방간 보조금의 역할 및 분류

지방세와 지방 세출간의 괴리(gap)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전재원이다. 이전재원제도 운용의 주요한 목적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외부효과 시정을 통한 지방사무의 보조, 국가시책의 추진 등이다. 지역간 재정력 균등화를 위한 보조금(equalizing grant)은 일반재원으로, 국가시책 목적의 지역사업 보조재원은 용도를 지정하여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각국마다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전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이전재원의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이전재원의 용도에 따라 특정보조금(Earmarked Grants)과 일반보조금(Non-earmarked Grants)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이전재원의 배분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의무적 배분체계(Mandatory) 보조금과 정해진 기준 없이 이전수준과 배분방식이 재량적으로 결정되는 재량적 배분체계(Discretionary)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보조금은 다시 순수 일반보조금(General purpose grants)과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포괄적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 구분된다. 또 특정보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수요에 대해 정부가 전액 재원을 제공하는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과 정부가 일정 비율만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으로 세분된다.

[그림 1] 이전재원 분류(OECD 기준)



자료: OECD(2006)

## 2.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원제도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에 의하면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교육자치단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배분하고 있다.

이전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은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충당된다. OECD 기준에 의한 이전재원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순수 일반보조금(General purpose grants)으로 분류된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표적인 특정보조금(Earmarked grants)에 해당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보조율에 따라 비매칭보조금(Non-matching grants)과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s)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국가위임사무의 경우는 사업비 전체를 보조해주고 있으므로 비매칭보조금(Non-matching grants)으로 분류되며,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20%~80%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s)으로 분류된다.



[표 1]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요(2009)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sup>1)</sup>
근 거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04.1.16 제정)
재 원	내국세의 19.24% + 중부세 - 보통교부세(18.3%) - 분권교부세(0.94%) - 부동산교부세(중부세)	내국세의 20% + 교육세 전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지역훼손부담금 농특세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용 도	일반재원	일반재원	보조목적사업의 용도에 한정(잔액 반환)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계정
배분방식	자자체별 재정부족액에 기초하여 배분	교육지자체별 재정부족액에 기초하여 배분	보조사업 규모, 보조율에 따라 배분	지역개발수요 및 낙후도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 배분

주: 1)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임.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9.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재원을 흡수하면서 기존에 각 부처가 7개의 일반·특별회계로 꾸려 왔던 균형발전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일환이므로 특정재원용 보조금에 해당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 사전에 지출한도(ceiling)를 통보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성격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3. 분권교부세의 도입배경 및 내용

참여정부 기간동안 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재정분권을 채택하고, 그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해 온 국고보조사업의 일괄정비를 시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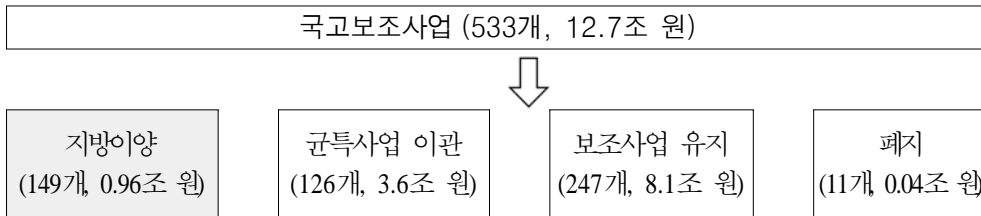
였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기준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었다.

[표 2] 국고보조금 정비기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지방사무</li> <li>■ 반복적 집행사업</li> <li>■ 소액 보조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국가사무</li> <li>■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SOC 개발사업</li> <li>■ 지역 개발관련 사업</li> <li>■ 지역 혁신관련 사업</li> </ul>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재정세계개혁』, 2005

[그림 2] 국고보조사업 정비 결과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재정세계개혁』, 2005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149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67개 사업이 사회복지관련 사업이며, 이양규모로는 전체 이양규모(149개 사업, 9,581억 원)의 62.2%(5,959억 원)를 차지하였다

분권교부세는 이러한 국고보조금 정비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즉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위한 포괄보조금으로서 2005년에 신설되었다.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분권교부세의 운

영기한을 2014년 말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다.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충당된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법정교부액이 내국세의 0.83%였으나,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되었다. 분권교부세는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되어 배분된다. 비경상적 수요는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되는 데, 경상적 수요와 일반수요는 공식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반면 특정수요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임의로 배정한다. 즉, 특정수요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경상적 수요와 일반수요의 경우에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원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분권교부세의 성격은 명목상 포괄보조금을 지향한다하더라도 사실상 국고보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법정률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금액(억 원)	8,454	10,065	11,053	12,595	13,328

### III. 사회보장비 확대와 지방재정부담

#### 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개관

[표 4]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복지, 보건 및 생활환경, 주택·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 분야에 절반 이상(51.4%)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개발(25.7%), 일반행정(22.9%) 등이다. 2002~2007년간 자치단체 총세출은 연평균 4.2% 증가한 데 반해 사회개발 분야의 지출은 6.1%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사회보장비 지출은 2002~2007년간 연평균 14.9%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10.7%p 상회하고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제개발 분야의 지출은 연평균 -1.1% 감소하였다.

[표 4] 지자체 기능별 세출

(단위 : 조 원, %)

	분권교부세 도입 전			분권교부세 도입 후			연평균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총지출(순계) <sup>1)</sup>	91.1	97.5	98.9	107.1	115.5	112.0	(4.2)
■ 일반행정 등	17.9	19.9	21.9	23.2	24.3	25.6	(7.5)
(비중)	(19.6)	(20.4)	(22.1)	(21.7)	(21.1)	(22.9)	
■ 사회개발비 <sup>2)</sup>	42.7	46.8	48.1	53.4	57.5	57.5	(6.1)
(비중)	(46.9)	(48.0)	(48.6)	(49.8)	(49.8)	(51.4)	
- 사회보장비	8.6	9.4	10.7	12.9	15.3	17.3	(14.9)
(비중)	(9.5)	(9.7)	(10.8)	(12.0)	(13.3)	(15.4)	
■ 경제개발비	30.5	30.8	28.9	30.5	33.6	28.8	(-1.1)
(비중)	(33.5)	(31.6)	(29.3)	(28.5)	(29.1)	(25.7)	

주: 1) 순계 예산기준

2) 사회보장·보건, 주택및지역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지방교육재정 제외)등으로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사회보장지출 가운데에서도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사회보장지출 예산을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사업은 10~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4%로서, 총 사회복지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증가율을 각각 4.5%p, 5.4%p 상회하고 있다.

[표 5] 지자체 사회보장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 사회복지예산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4.9)
■ 국고보조사업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14.0)
(비중)	(81.4)	(79.0)	(82.0)	(73.8)	(75.6)	(78.4)	
■ 지방이양사업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482	(19.4)
(비중)	(10.7)	(11.1)	(12.1)	(13.1)	(12.5)	(13.0)	

자료: 감사원(2008)

## 2.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다음으로는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계산해보았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인 2002~2004년 평균 30.2%에서 도입 이후인 2005~2007년 평균 31.8%로 1.6%p 상승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53.4%에서 65.5%로 12.1%p 상승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은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 재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단순히 2004년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

계액(9,581억 원)에 맞추어 결정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sup>3)</sup>.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수요 급증으로 2004~2007년간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20.2%에 달한 반면 재원인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8.2%에 그쳐 그 차이 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표 6] 사회복지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사회복지예산 대비)

(단위 : 억 원, %)

	분권교부세 도입 전			분권교부세 도입 후			도입전 증가율	도입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사회복지예산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1.1	17.4
■ 국고보조사업 (A=B+C)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11.5	15.7
- 국고보조금(B)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11.0	14.9
- 지방비(C)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12.6	17.5
(부담비율 C/A)	(29.7)	(30.8)	(30.3)	(31.6)	(32.1)	(31.7)	(30.2)	(31.8)
■ 지방이양사업 (D=E+F)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482	18.3	20.2
- 분권교부세(E) <sup>1)</sup>	4,215	4,912	6,107	5,531	6,955	7,734	20.4	8.2
- 지방비(F)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748	16.6	29.2
(부담비율 F/D)	(54.4)	(52.9)	(52.8)	(67.1)	(63.8)	(65.6)	(53.4)	(65.5)

주: 1) 2004년 이전은 국고보조금  
2) 감사원 자료(2008)를 기초로 필자가 재계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세입 중 가용재원 중에서 사회복지장비 지방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보았다. 여기서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에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

3) 실제로는 2005년의 담배소비세수 증가를 예상하여 위 9,581억 원에서 담배소비세수 증가예상액인 1,127억 원을 감액한 8,454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담배소비세수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이양 첫 해부터 분권교부세가 부족하게 되어 그 부족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했다.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2002 ~ 2007년간 가용재원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 지방재정부담액은 연평균 17.4%나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비율은 2002년 4.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1%에 이르고 있다.

[표 7] 사회보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가용재원 대비)

(단위 : 억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 세입(순계) <sup>1)</sup>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280,366	7.04
- 자체수입+자주자원(A)	703,182	781,777	814,390	898,889	943,718	1,061,214	8.58
■ 경직성지출(B) <sup>2)</sup>	163,497	177,900	192,981	206,842	225,414	248,997	8.78
■ 가용재원(C=A-B)	539,685	603,877	621,409	692,047	718,304	812,216	8.52
■ 지방비부담액(D=E+F)	25,922	28,427	33,330	41,363	49,440	57,738	17.37
■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비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14.00
- 지방비부담액(E)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15.53
■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비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482	19.44
- 지방비부담액(F)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748	23.99
■ 지방비부담비율(G=D/C)	4.80%	4.71%	5.36%	5.98%	6.88%	7.11%	
- 국고보조사업(E/C)	3.87%	3.79%	4.26%	4.35%	5.18%	5.29%	
-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F/C)	0.93%	0.91%	1.10%	1.63%	1.70%	1.82%	

주: 1) 순계 예산기준

2) 일반행정비, 인건비, 예비비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IV.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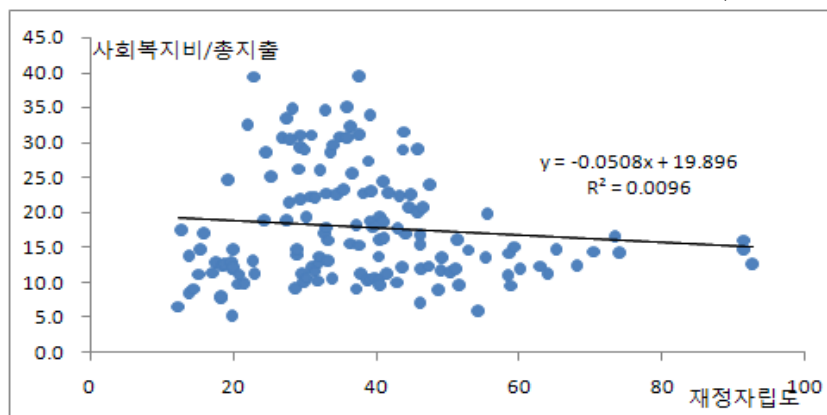
### 1.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

#### 가. 상관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후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보장비의 재정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는 자료 입수가 가능한 22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 [그림 3]과 [그림 4]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인 2004년과 도입 이후인 2007년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2007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보장비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200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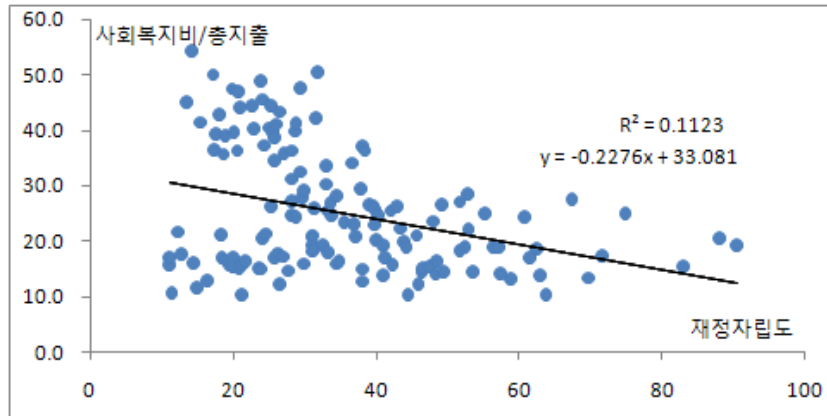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5



[그림 4]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비중 간의 관계(2007)

(단위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자치구·시·군 등 자치단체 단위별로 재정행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단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치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2004년 -0.56에서 2007년 -0.73으로 커져 사회복지 기능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복지 기능 확대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군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8]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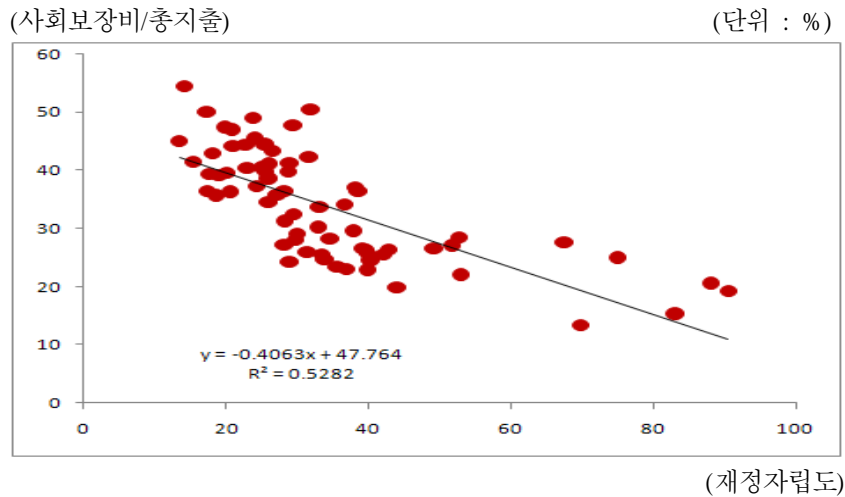
(단위 : %)

	자치구				시				군			
	자립도 '04	자립도 '05	자립도 '06	자립도 '07	자립도 '04	자립도 '05	자립도 '06	자립도 '07	자립도 '04	자립도 '05	자립도 '06	자립도 '07
사회보장지출 2004	-0.56 (-5.56) ***	-0.62 (-6.42) ***	-0.63 (-6.70) ***	-0.65 (-6.99) ***	0.05 (0.43)	-0.03 (-0.26)	-0.07 (-0.62)	-0.12 (-1.02)	0.16 (1.44)	0.10 (0.92)	0.07 (0.60)	0.00 (0.02)
사회보장지출 2005	-0.59 (-6.03) ***	-0.64 (-6.88) ***	-0.66 (-7.28) ***	-0.69 (-7.71) ***	0.13 (1.13)	0.13 (1.08)	0.07 (0.61)	-0.05 (-0.45)	0.23 (2.12)	0.24 (2.23) *	0.19 (1.79) *	0.06 (0.58) *
사회보장지출 2006	-0.61 (-6.33) ***	-0.68 (-7.53) ***	-0.72 (-8.44) ***	-0.74 (-8.88) ***	0.18 (1.59)	0.12 (0.99)	0.05 (0.43)	0.01 (0.11)	0.27 (2.62)	0.23 (2.19)	0.18 (1.68)	0.13 (1.15)
사회보장지출 2007	-0.59 (-6.05) ***	-0.66 (-7.24) ***	-0.71 (-8.32) ***	-0.73 (-8.66) ***	0.19 (1.67)	0.12 (1.04)	0.08 (0.71)	0.02 (0.16)	0.29 (2.76)	0.24 (2.23)	0.20 (1.91)	0.13 (1.16)
표본수	69	69	69	69	74	74	74	74	86	86	86	86

주: 1) ( )안은 T-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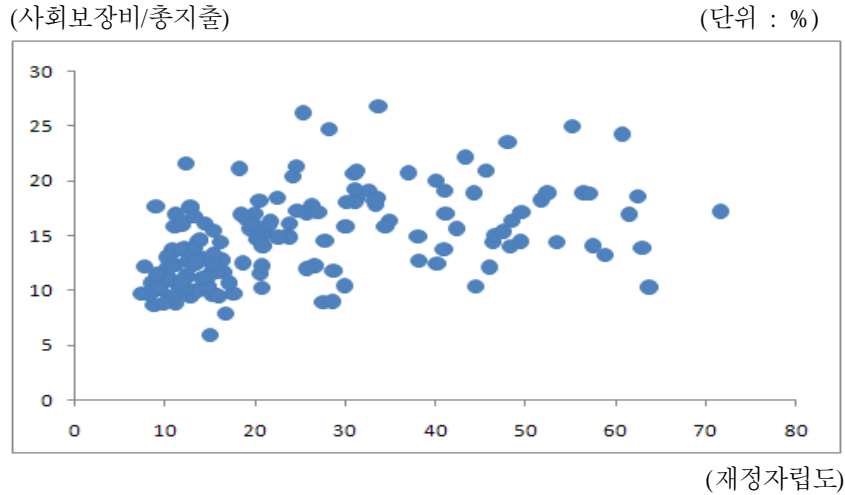
2)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림 5]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비중 간의 관계(자치구)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그림 6]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시·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 나. 회귀분석

### (1) 모형설정

위의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인구구조 특성 등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보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재정자립도(SELF), 인구(LPOP), 노령인구 비중(OLDPOP),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PPOP)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치단체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SOCIALS)을 설정하였다<sup>4)</sup>. 각 설명변수의 계수는 다음과 같은 부호

4) 자치단체 인구에 대해서는 로그(log)를 취하였다.

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 경우 SELF의 계수는 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노령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지출 소요가 더 커진다면 LPOP, OLDPOP, PPOP의 계수는 모두 양(+ )일 것으로 예상된다.

$$\text{사회보장지출/총지출} = f(\text{재정자립도, 인구, 노령인구 비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비중})$$

## (2) 데이터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는 특·광역시 본청, 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69개 자치구, 74개 시, 86개 군)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4 ~ 2007년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자치단체 총세출과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방재정연감』의 자치단체별 세출예산 순계치를 이용하였다. 설명변수 중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통계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였다. 노령인구 비중 역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노령인구 비중은 자치단체별 총인구수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중은 자치단체별 총인구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 (3) 분석결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과 같은 추정치를 얻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 인구가 많을수록, 노령인구비중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이 높을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노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진다.

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노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많은 시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진다.

군 지역에서도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노령인구가 많은 군일수록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회귀분석 결과

(단위 : %)

종속변수		사회보장비/총지출(SOCIALS)			
설명변수	자치단체	전체	자치구	시	군
재정자립도(SELF)		-0.072 (0.016)***	-0.078 (0.043)*	0.006 (0.013)	0.023 (0.039)
인구(LPOP)		40.081 (3.251)***	56.303 (7.940)***	27.050 (3.060)***	27.148 (4.094)***
노령인구(OLDPOP)		2.119 (0.096)***	2.988 (0.433)***	2.385 (0.159)***	1.013 (0.092)***
기초수급자(PPOP)		3.171 (0.265)***	8.308 (1.170)***	1.529 (0.510)***	0.159 (0.207)
R-squared		0.962	0.955	0.884	0.862
Adjusted R-squared		0.949	0.939	0.844	0.814
표본수					
Cross-sections included		229	69	74	86
Total pool obs.		916	276	296	344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Pooled Least Squares(Fixed effect) 추정치

이번에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은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주된 관심변수인 재정자립도(SELF)의 계수 값이 2004년 -0.133에서 2007년 -0.268으로 커져 사회복지 기능 확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자치구)

(단위 : %)

종속변수	사회보장비/총지출(SOCIALS)			
설명변수 \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정자립도(SELF)	-0.133 (0.031)***	-0.180 (0.032)***	-0.270 (0.036)***	-0.268 (0.037)***
인구(LPOP)	6.287 (1.006)***	7.673 (1.016)***	7.510 (1.129)***	7.662 (1.165)***
노령인구(OLDPOP)	-0.659 (0.318)**	-0.827 (0.302)**	-0.736 (0.321)**	-0.843 (0.315)**
기초수급자(PPOP)	4.698 (0.498)***	4.899 (0.486)***	3.957 (0.550)***	4.429 (0.571)***
R-squared	0.764	0.830	0.814	0.823
Adjusted R-squared	0.749	0.820	0.803	0.812
표본수	69	69	69	69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Pooled Least Squares 추정치

## 2. 자치단체별 사회보장지출 수요지표와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다음으로 사회보장지출 비중 결정요인과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1]은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과 재정자립도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표 11]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의 상관관계

(단위: %)

	전체				자치구				시·군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기초수급자 2004	-0.74	-0.69	-0.68	-0.72	-0.44	-0.53	-0.59	-0.58	-0.77	-0.68	-0.69	-0.79
	(-16.68)	(-14.46)	(-14.16)	(-15.75)	(-3.99)	(-5.13)	(-5.96)	(-5.79)	(-15.04)	(-11.76)	(-12.09)	(-15.96)
	***	***	***	***	***	***	***	***	***	***	***	***
기초수급자 2005	-0.75	-0.70	-0.69	-0.74	-0.44	-0.54	-0.60	-0.59	-0.77	-0.69	-0.70	-0.80
	(-16.90)	(-14.66)	(-14.53)	(-16.44)	(-4.06)	(-5.31)	(-6.16)	(-5.97)	(-15.35)	(-11.85)	(-12.25)	(-16.50)
	***	***	***	***	***	***	***	***	***	***	***	***
기초수급자 2006	-0.74	-0.69	-0.70	-0.74	-0.44	-0.54	-0.60	-0.59	-0.77	-0.68	-0.70	-0.80
	(-16.71)	(-14.49)	(-14.57)	(-16.74)	(-3.96)	(-5.23)	(-6.11)	(-5.92)	(-15.33)	(-11.71)	(-12.19)	(-16.65)
	***	***	***	***	***	***	***	***	***	***	***	***
기초수급자 2007	-0.74	-0.69	-0.70	-0.75	-0.44	-0.54	-0.60	-0.59	-0.78	-0.68	-0.69	-0.80
	(-16.72)	(-14.39)	(-14.63)	(-17.06)	(-4.01)	(-5.27)	(-6.18)	(-5.96)	(-15.49)	(-11.58)	(-12.12)	(-16.84)
	***	***	***	***	***	***	***	***	***	***	***	***
표본수	229	229	229	229	69	69	69	69	160	160	160	160

주: 1) ( )안은 T-value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다음으로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치구에 서는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2]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의 상관관계

(단위: %)

	전체				자치구				시·군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노령인구 2004	-0.76 (-17.83) ***	-0.69 (-14.41) ***	-0.67 (-13.51) ***	-0.70 (-14.64) ***	-0.06 (-0.49)	-0.12 (-0.98)	-0.16 (-1.31)	-0.12 (-1.01)	-0.85 (-20.58) ***	-0.74 (-13.97) ***	-0.75 (-14.19) ***	-0.85 (-20.00) ***
노령인구 2005	-0.77 (-17.95) ***	-0.69 (-14.50) ***	-0.67 (-13.63) ***	-0.70 (-14.82) ***	-0.07 (-0.60)	-0.13 (-1.11)	-0.17 (-1.42)	-0.14 (-1.14)	-0.86 (-20.77) ***	-0.75 (-14.06) ***	-0.75 (-14.32) ***	-0.85 (-20.25) ***
노령인구 2006	-0.77 (-18.03) ***	-0.69 (-14.54) ***	-0.67 (-13.71) ***	-0.71 (-15.02) ***	-0.09 (-0.71)	-0.15 (-1.24)	-0.18 (-1.53)	-0.15 (-1.26)	-0.86 (-20.87) ***	-0.75 (-14.06) ***	-0.75 (-14.35) ***	-0.85 (-20.49) ***
노령인구 2007	-0.77 (-18.14) ***	-0.70 (-14.61) ***	-0.68 (-13.82) ***	-0.71 (-15.22) ***	-0.10 (-0.78)	-0.16 (-1.32)	-0.19 (-1.60)	-0.16 (-1.34)	-0.86 (-21.11) ***	-0.75 (-14.16) ***	-0.76 (-14.48) ***	-0.86 (-20.84) ***
표본수	229	229	229	229	69	69	69	69	160	160	160	160

주: 1) ( )안은 T-value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재정자립도와 영유아수 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치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시·군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영유아수 비중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3]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영유아수 비중의 상관관계

(단위: %)

	전체				자치구				시·군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자립도 2004	자립도 2005	자립도 2006	자립도 2007
영유아수 2004	0.47	0.42	0.44	0.53	-0.16	-0.07	-0.06	-0.06	0.75	0.64	0.66	0.78
	(8.00)	(6.95)	(7.37)	(9.34)	(-1.29)	(-0.59)	(-0.48)	(-0.50)	(14.21)	(10.54)	(11.03)	(15.51)
	***	***	***	***					***	***	***	***
영유아수 2005	0.47	0.43	0.45	0.53	-0.13	-0.05	-0.03	-0.03	0.74	0.64	0.65	0.77
	(8.08)	(7.13)	(7.53)	(9.48)	(-1.08)	(-0.37)	(-0.27)	(-0.28)	(13.72)	(10.42)	(10.89)	(15.18)
	***	***	***	***					***	***	***	***
영유아수 2006	0.48	0.43	0.45	0.54	-0.10	-0.01	0.00	0.00	0.72	0.63	0.65	0.76
	(8.14)	(7.25)	(7.69)	(9.68)	(-0.81)	(-0.10)	(0.02)	(0.03)	(13.13)	(10.16)	(10.67)	(14.83)
	***	***	***	***					***	***	***	***
영유아수 2007	0.46	0.42	0.45	0.53	-0.07	0.01	0.02	0.02	0.70	0.61	0.63	0.74
	(7.80)	(7.07)	(7.52)	(9.40)	(-0.61)	(0.10)	(0.18)	(0.20)	(12.18)	(9.71)	(10.24)	(13.90)
	***	***	***	***					***	***	***	***
표본수	229	229	229	229	69	69	69	69	160	160	160	160

주: 1) ( )안은 T-value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재정자립도와 장애자수 비중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장애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치단체 단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자수 비중의 상관관계

(단위: %)

	전체	자치구	시·군
	재정자립도 2005	재정자립도 2005	재정자립도 2005
장애자수 <sup>1)</sup> 2005	-0.69 (-14.27)***	-0.39 (-3.45)***	-0.70 (-12.37)***

주: 1)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05)」의 활동계약 인구수

2) ( )안은 T-value

3)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결과를 종합하면 자치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수, 장애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노령인구 비중, 영유아수 비중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노인인구 비중, 기초생활수급자수 비중, 장애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유아수 비중과 재정자립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실증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광역시외의 자치구간에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회보장지출 수혜 대상자의 지역적 편중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 수요지표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수, 장애자 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간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의 비중이 더 높고, 그 결과 사회보장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15]는 기초생활수급자수 상위 30%인 자치구와 하위 30%인 자치구간에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30%인 자치구의 경우 하위 30%인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 수준은 낮은 데 반해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30%인 자치구에서 2004년에 비해 2007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기초생활수급자별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단위: %)

	2004		2007	
	사회보장지출 / 총지출	재정자립도	사회보장지출 / 총지출	재정자립도
기초수급자 하위30%구	17.4	49.3	25.3	43.3
기초수급자 상위30%구	31.1	33.4	43.1	26.5

반면 시·군의 경우는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치구에 비해 낮은 데다 시·군 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편차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분석대상 기간인 2007년까지는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데 노령인구 비중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실증분석 결과 노령인구 비중이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결정하는 유의한 설명변수인 점과 노령인구 비중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이 본격화될 경우 시·군 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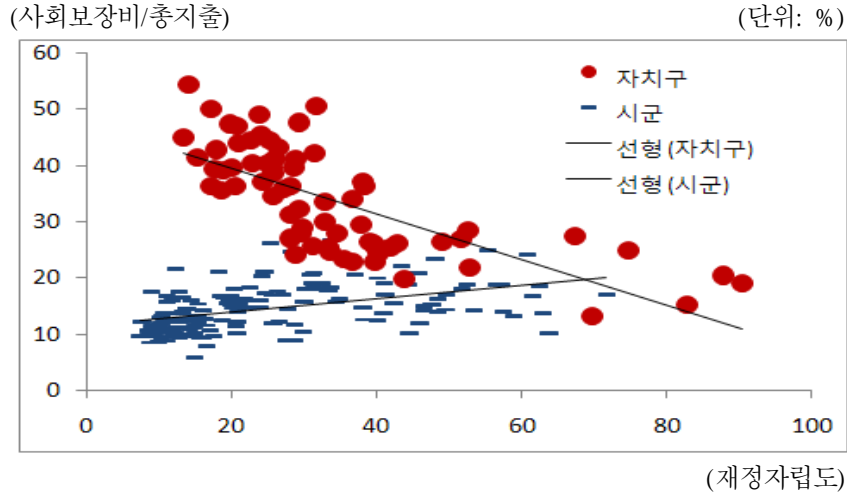
[표 16] 지자체 단위별 사회보장비 비중(2007년 결산)

(단위 : 십억 원, %)

	자치구	시	군
총세출	13,702.3	33,349.6	19,293.4
－ 사회보장비	4,515.8	5,783.5	2,409.7
(비중)	(33.0)	(17.3)	(12.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8

[그림 7]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전체)



[표 17] 2004 ~ 2007년간 가용자원 증가율과 사회보장비 증가율 간 격차

(단위 : %, %p)

	가용자원 연평균 증가율(A) (04~07)	사회보장비 연평균 증가율(B) (04~07)	격차 (A-B)
○ 자치구 계	3.6	21.0	-17.4
재정자립도 하위 30% 구	2.5	22.2	-19.7
재정자립도 상위 30% 구	4.5	18.0	-13.5
○ 시 계	13.9	23.4	-9.4
재정자립도 하위 30% 시	16.0	19.3	-3.3
재정자립도 상위 30% 시	11.8	25.7	-13.8
○ 군 계	14.9	17.7	-2.9
재정자립도 하위 30% 군	17.0	16.9	0.0
재정자립도 상위 30% 군	12.6	18.1	-5.5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호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있어서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압박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은 2004 ~ 2007년간 가용자원

과 사회보장비 연평균 증가율을 기초자치단체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2004 ~ 2007년간 가용재원 증가율은 3.6%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 연평균 증가율은 21.0%에 달해 둘 간의 격차는 -17.4%p에 달한다.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자치구의 가용재원 증가율과 사회보장비 증가율간의 격차(-17.4%p)가 시(-9.4%p), 군(-2.9%p)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 하위 30%인 자치구의 경우 2004 ~ 2007년간 가용재원 연평균 증가율은 2.5%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동안 사회보장비는 22.2%나 증가하여 둘 간의 격차는 -19.7%p에 달하였다.

## V. 주요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실증분석 결과가 실제 상황과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사항은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인해 실제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였는가와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 대상 기초자치단체 229개(69개 자치구, 74개 시, 86개 군)를 기준으로 총세출 규모, 가용재원 수준,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수, 노령인구 수 등을 비교하였다<sup>5)</sup>.

아래 표는 자치단체 단위별로 가용재원 대비 사회복지장비 비율이 최고인 기초자치단체와 최저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가용재원대비 사회복지장비 지출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노원구의 가용재원 대비 사회복지장비 지출 비중은 138.6%(2007년)로서 서초구(44.5%, 2007년)에 비해 훨씬 높고, 최근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가용재원대비 사회복지장비 지출 비중이 높고, 최근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군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의 사회복지장비 비중이 더 높으나 자치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장비지출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기초생활수급자수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초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883명(2007년)으로 서초구 전체 인구의 0.7%에 불과한 반면, 노원구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1,174명(2007년)으로 노원구 인구의 3.4%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수 비중이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장비지출 수준의 격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표 18]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

(단위 : 십억 원, %, 명)

서울시 자치구	서초구(최저)	노원구(최고)
○가용재원(A) <sup>2)</sup>	(04)115.8 → (07)128.3	(04)79.9 → (07)98.8
사회보장비(B)	(04)35.3 → (07)57.1	(04)82.2 → (07)136.9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30.4 → (07)44.5</b>	<b>(04)102.9 → (07)138.6</b>
○재정자립도(07)	90.5	28.8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b>2,883(0.7%)<sup>1)</sup></b>	<b>21,174(3.4%)<sup>1)</sup></b>
- 65세이상 인구수	28,905(7.1%) <sup>1)</sup>	50,564(8.2%) <sup>1)</sup>
- 총인구수	405,969	616,753
광역시 자치구	인천 중구(최저)	부산 서구(최고)
○가용재원(A)	(04)46.2 → (07)50.4	(04)25.8 → (07)22.3
사회보장비(B)	(04)17.6 → (07)30.1	(04)36.4 → (07)54.4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38.2 → (07)59.7</b>	<b>(04)141.1 → (07)244.2</b>
○재정자립도(07)	44.0	13.5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3,148(3.5%) <sup>1)</sup>	6,252(4.7%) <sup>1)</sup>
- 65세이상 인구수	9,704(10.8%) <sup>1)</sup>	17,560(13.2%) <sup>1)</sup>
- 총인구수	89,768	132,803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2) 가용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경직성경비  
(일반행정비 +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표 19]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계속)

(단위 : 십억 원, %, 명)

시	경기 용인시(최저)	전북 익산시(최고)
○가용재원(A) <sup>2)</sup>	(04)497.1 → (07)768.4	(04)157.5 → (07)243.8
사회보장비(B)	(04)46.9 → (07)115.5	(04)82.8 → (07)136.0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9.4 → (07)15.0</b>	<b>(04)52.6 → (07)55.8</b>
○재정자립도(07)	58.0	32.8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5,849(0.7%) <sup>1)</sup>	17,597(5.6%) <sup>1)</sup>
- 65세이상 인구수	61,614(7.7%) <sup>1)</sup>	36,808(11.7%) <sup>1)</sup>
- 총인구수	800,294	313,590
군	경북 울릉군(최저)	전북 순창군(최고)
○가용재원(A)	(04)30.9 → (07)47.0	(04)41.3 → (07)70.8
사회보장비(B)	(04)4.4 → (07)6.8	(04)15.9 → (07)33.0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14.2 → (07)14.4</b>	<b>(04)38.5 → (07)46.6</b>
○재정자립도(07)	15.0	9.0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446(4.4%) <sup>1)</sup>	2,019(6.3%) <sup>1)</sup>
- 65세이상 인구수	<b>1,758(17.4%)<sup>1)</sup></b>	<b>8,479(26.5%)<sup>1)</sup></b>
- 총인구수	10,125	32,035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2) 가용재원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경직성경비  
(일반행정비 +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 VI. 결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2007년간 가용재원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비 지방재정부담액은 연평균 17.4%나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비율은 2002년 4.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기능 이양 이전 평균 30.2%에서 이양 이후에는 평균 31.8%로 1.6%p 상승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53.4%에서 65.5%로 12.1%p 상승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은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 재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단순히 2004년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9,581억 원)에 맞추어 결정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수요 급증으로 2004~2007년간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20.2%에 달한 반면 재원인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8.2%에 그쳐 그 차이 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해야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시·군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군에 비해 세입 규모가 작은 데 반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자치구의 경우 2004~2007년간 가용재원 증가율과 사회보장비 증가율의 격차는 -17.4%p로서, 시(-9.4%p), 군(-2.9%p)에 비해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복지수요 증가속도 대비 가용재원 증가 속도를 감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수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sup>6)</sup> 이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0년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sup>7)</sup> 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향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기능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특·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sup>8)</sup>의 배분방식을 자치구별 사회보장지출 수요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 자치구에서는 둘 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기능 확대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가 밀집해 사회복지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시·군 지역에서는 재정자

6)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계층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10~60%로 결정되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7)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연간 1.4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보도자료, 2009.9월).

8) 특·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시·군의 경우에서는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치구에 비해 낮은데다 자치단체 간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노령인구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본격화될 경우 시·군 지역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 사회보장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향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예정대로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은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회복지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지방간 역할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이양방식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중앙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그다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재구성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재배분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및 재원이양방식 재검토시 지방 분권화와 고령화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자

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압박당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지자체 복지비 지출 중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노령화가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심혜정 [2009]).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고령화를 연계하여 기능 및 재원이양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이 모든 사회복지 분야 분권화에 대한 기본 구상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 체계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 등 재정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사원,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08. 4.
- 고영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185 ~ 261.
-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9. 6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용역보고서, 2008. 10.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9.
- 심혜정,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NABO 경제현안분석 제35호, 2008. 12.
- \_\_\_\_\_,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사례와 시사점」, NABO 경제포커스 2009-1호, 2009. 3.
- 윤희숙,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의 정립」,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369 ~ 418.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재정세계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5, 200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호.
- \_\_\_\_\_, 『지방재정연감』 각호.
- Arzaghi, M. and Vernon Herderson, "Why countries are fiscally decentraliz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1157 ~ 1189, 2005.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1965/2006, 2007.
- \_\_\_\_\_,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2006.

## 부 록

### 사례 분석

#### 가. 총지출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

##### (1) 서울시 자치구

(단위: 십억 원, %, 명)

	종로구(최저)	노원구(최고)
○ 총세입 = 총지출(A)	(04)197.3 → (07)246.6	(04)264.0 → (07)344.2
사회보장비(B)	(04)24.7 → (07)32.9	(04)82.2 → (07)136.9
<b>사회보장비/총지출(B/A)</b>	<b>(04)12.5 → (07)13.3</b>	<b>(04)31.1 → (07)39.8</b>
○ 재정자립도(07)	69.8	28.8
○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b>3,036(1.8%)<sup>1)</sup></b>	<b>21,174(3.4%)<sup>1)</sup></b>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 (2) 광역시 자치구

(단위: 십억 원, %, 명)

	인천 중구(최저)	부산 북구(최고)
○ 총세입 = 총지출(A)	(04)109.4 → (07)151.8	(04)120.6 → (07)173.3
사회보장비(B)	(04)17.6 → (07)30.1	(04)47.5 → (07)94.2
<b>사회보장비/총지출(B/A)</b>	<b>(04)16.1 → (07)19.8</b>	<b>(04)39.4 → (07)54.4</b>
○ 재정자립도(07)	44.0	14.2
○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3,148(3.5%) <sup>1)</sup>	15,852(4.9%)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 (3) 시

(단위: 십억 원, %, 명)

	경기 용인시(최저)	전북 전주시(최고)
○총세입=총지출(A)	(04)785.8 → (07)1,125.5	(04)502.2 → (07)734.4
사회보장비(B)	(04)46.9 → (07)115.5	(04)104.3 → (07)197.0
<b>사회보장비/총지출(B/A)</b>	<b>(04)6.0 → (07)10.2</b>	<b>(04)20.8 → (07)26.8</b>
○재정자립도(07)	63.8	33.7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5,849(0.7%) <sup>1)</sup>	24,579(3.9%)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 (4) 군

(단위: 십억 원, %, 명)

	경북 울릉군(최저)	부산 기장군(최고)
○총세입=총지출(A)	(04)83.5 → (07)115.0	(04)140.2 → (07)198.6
사회보장비(B)	(04)4.4 → (07)6.8	(04)16.9 → (07)36.6
<b>사회보장비/총지출(B/A)</b>	<b>(04)5.3 → (07)5.9</b>	<b>(04)12.1 → (07)18.4</b>
○재정자립도(07)	15.0	33.6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446(4.4%) <sup>1)</sup>	3,192(4.0%)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나.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최고/최저 자치단체

(1) 서울시 자치구

(단위: 십억 원, %, 명)

	서초구(최저)	노원구(최고)
○가용재원(A)	(04)115.8 → (07)128.3	(04)79.9 → (07)98.8
사회보장비(B)	(04)35.3 → (07)57.1	(04)82.2 → (07)136.9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30.4 → (07)44.5</b>	<b>(04)102.9 → (07)138.6</b>
○재정자립도(07)	90.5	28.8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2,883(0.7%) <sup>1)</sup>	21,174(3.4%)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2) 광역시 자치구

(단위: 십억 원, %, 명)

	인천 중구(최저)	부산 서구(최고)
○가용재원(A)	(04)46.2 → (07)50.4	(04)25.8 → (07)22.3
사회보장비(B)	(04)17.6 → (07)30.1	(04)36.4 → (07)54.4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38.2 → (07)59.7</b>	<b>(04)141.1 → (07)244.2</b>
○재정자립도(07)	44.0	13.5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3,148(3.5%) <sup>1)</sup>	6,252(4.7%)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 (3) 시

(단위: 십억 원, %, 명)

	경기 용인시(최저)	전북 익산시(최고)
○가용재원(A)	(04)497.1 → (07)768.4	(04)157.5 → (07)243.8
사회보장비(B)	(04)46.9 → (07)115.5	(04)82.8 → (07)136.0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9.4 → (07)15.0</b>	<b>(04)52.6 → (07)55.8</b>
○재정자립도(07)	58.0	32.8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5,849(0.7%) <sup>1)</sup>	17,597(5.6%)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 (4) 군

(단위: 십억 원, %, 명)

	경북 울릉군(최저)	전북 순창군(최고)
○가용재원(A)	(04)30.9 → (07)47.0	(04)41.3 → (07)70.8
사회보장비(B)	(04)4.4 → (07)6.8	(04)15.9 → (07)33.0
사회보장비/가용재원(B/A)	<b>(04)14.2 → (07)14.4</b>	<b>(04)38.5 → (07)46.6</b>
○재정자립도(07)	15.0	9.0
○복지수요지표(07)		
- 기초생활수급자수	446(4.4%) <sup>1)</sup>	2,019(6.3%) <sup>1)</sup>

주: 1) 자치단체별 총인구수 대비 비중

다.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순위(전체)

(1) 서울시 자치구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노원구	263,988	82,170	31	344,156	136,867	40	29	21,174
2	강서구	249,175	72,386	29	290,422	107,533	37	38	19,068
3	중랑구	213,827	41,693	19	251,340	81,450	32	30	10,021
4	관악구	230,075	52,490	23	255,450	79,744	31	28	9,696
5	은평구	197,393	43,975	22	264,779	79,865	30	33	8,981
6	강북구	204,290	43,958	22	269,807	78,410	29	30	9,769
7	양천구	214,189	44,663	21	247,135	70,284	28	53	6,947
8	도봉구	187,106	42,666	23	211,647	59,496	28	35	4,715
9	영등포구	204,496	33,940	17	273,659	75,373	28	67	8,228
10	마포구	219,241	42,741	19	252,922	68,433	27	52	6,098
11	성북구	224,004	40,033	18	266,535	70,721	27	39	8,025
12	강동구	199,087	32,707	16	222,894	59,028	26	49	5,706
13	구로구	195,318	45,246	23	241,298	63,419	26	43	6,626
14	성동구	209,143	47,294	23	232,860	59,924	26	40	7,294
15	금천구	169,278	29,010	17	230,868	58,785	25	33	7,284
16	동작구	199,954	44,733	22	230,098	58,579	25	42	5,933
17	송파구	265,010	37,944	14	303,773	75,758	25	75	5,645
18	서대문구	188,231	33,777	18	248,278	60,887	25	40	5,693
19	동대문구	237,449	37,141	16	278,971	63,985	23	37	8,091
20	광진구	189,859	29,264	15	227,186	51,882	23	40	4,892
21	용산구	216,804	31,861	15	230,364	50,611	22	53	3,944
22	강남구	359,377	52,953	15	453,242	93,120	21	88	8,195
23	서초구	219,455	35,264	16	298,906	57,129	19	91	2,883
24	중구	187,950	23,840	13	246,990	37,797	15	83	3,949
25	종로구	197,317	24,743	13	246,636	32,869	13	70	3,036

(2) 광역시 자치구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부산북구	120,604	47,538	39	173,269	94,188	54	14	15,852
2	대구달서구	175,656	69,516	40	234,080	118,134	50	32	22,930
3	광주북구	189,536	66,185	35	235,057	117,439	50	17	22,039
4	부산사하구	139,083	47,354	34	165,607	81,039	49	24	13,887
5	부산해운대구	146,540	46,234	32	197,869	94,299	48	29	14,163
6	부산금정구	123,543	37,946	31	151,223	71,681	47	20	8,272
7	대구동구	153,440	51,447	34	212,600	99,763	47	21	13,213
8	대구북구	166,200	51,682	31	218,650	99,516	46	24	14,171
9	부산서구	111,970	36,426	33	120,917	54,442	45	14	6,252
10	부산사상구	111,194	34,697	31	148,149	65,798	44	25	11,366
11	광주서구	146,353	43,149	29	167,931	74,523	44	23	11,032
12	광주광산구	149,533	45,989	31	187,601	82,688	44	21	11,357
13	인천부평구	180,040	62,525	35	271,461	117,572	43	27	15,805
14	광주남구	127,007	31,438	25	145,450	62,316	43	18	8,168
15	부산진구	154,016	44,924	29	177,726	75,017	42	32	13,910
16	부산영도구	95,493	27,693	29	120,785	49,981	41	16	8,348
17	대전서구	172,905	42,334	24	218,463	89,841	41	29	10,099
18	인천연수구	106,797	34,547	32	155,034	63,673	41	26	7,328
19	인천계양구	96,296	22,546	23	143,600	58,091	40	25	5,834
20	대전중구	134,200	34,962	26	168,256	67,825	40	23	10,919
21	인천남구	155,815	46,288	30	199,769	79,276	40	26	9,905
22	부산동구	92,546	26,567	29	110,148	43,572	40	20	7,766
23	대전동구	154,840	44,499	29	199,004	78,319	39	18	12,351
24	대구남구	85,114	26,001	31	122,100	47,697	39	19	7,452
25	대구서구	99,400	30,672	31	129,600	49,998	39	26	9,474
26	부산남구	110,938	28,474	26	141,134	52,490	37	24	8,015
27	광주동구	106,610	27,967	26	121,626	44,308	36	17	5,617
28	대구수성구	163,221	57,354	35	264,800	96,183	36	39	15,498
29	부산연제구	97,051	26,563	27	124,070	45,025	36	28	6,466
30	대전대덕구	120,800	35,387	29	160,936	58,351	36	21	7,065
31	부산동래구	99,491	22,562	23	120,921	43,229	36	27	5,599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32	울산중구	93,633	23,574	25	122,786	43,720	36	19	6,289
33	부산수영구	76,671	14,462	19	96,861	33,453	35	26	4,618
34	인천남동구	153,576	35,102	23	226,247	76,971	34	37	11,215
35	인천서구	150,512	36,288	24	232,792	78,355	34	33	8,052
36	울산북구	80,557	14,770	18	100,871	29,774	30	38	1,678
37	부산강서구	93,056	16,688	18	109,629	30,593	28	30	2,313
38	인천동구	79,515	15,090	19	109,789	29,779	27	28	3,306
39	대전유성구	113,240	19,244	17	160,000	41,879	26	40	3,163
40	대구중구	88,812	15,009	17	110,760	28,599	26	31	3,771
41	울산동구	75,256	14,100	19	103,218	25,452	25	34	2,469
42	부산중구	64,587	8,014	12	66,548	16,138	24	29	2,387
43	울산남구	118,139	23,724	20	182,881	42,750	23	36	4,759
44	인천중구	109,378	17,637	16	151,832	30,116	20	44	3,148

### (3) 시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전주	502,206	104,309	21	734,375	197,040	27	34	24,579
2	익산	376,646	82,795	22	517,603	135,975	26	25	17,597
3	안산	493,153	74,779	15	624,535	156,196	25	55	16,955
4	목포	270,668	59,949	22	405,889	100,337	25	28	12,618
5	안양	413,277	61,483	15	525,131	127,526	24	61	8,106
6	청주	497,461	98,674	20	724,621	170,573	24	48	15,860
7	의정부	331,037	38,391	12	399,994	88,786	22	43	10,733
8	정읍	291,879	51,125	18	366,628	79,206	22	12	11,293
9	군산	347,235	66,035	19	494,263	105,297	21	25	16,006
10	논산	247,506	36,792	15	324,819	68,689	21	18	7,645
11	진해	189,373	28,168	15	225,537	47,320	21	31	3,671
12	광명	261,348	40,536	16	334,783	70,164	21	46	5,639
13	구리	195,093	23,038	12	238,849	49,589	21	37	4,921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4	경산	252,889	40,651	16	353,400	73,194	21	31	9,120
15	동두천	146,435	17,893	12	177,571	36,198	20	24	2,989
16	마산	395,105	64,224	16	570,308	114,370	20	40	10,789
17	진주	361,415	49,734	14	522,769	100,461	19	31	12,085
18	남양주	308,723	36,990	12	493,137	94,422	19	41	7,729
19	포천	245,580	28,601	12	313,100	59,825	19	33	5,400
20	천안	509,000	61,144	12	617,200	116,733	19	53	9,748
21	부천	608,968	86,545	14	843,251	159,445	19	57	15,900
22	의왕	139,389	19,197	14	183,677	34,715	19	44	1,323
23	시흥	298,448	33,189	11	438,735	82,770	19	57	5,937
24	수원	808,657	100,016	12	984,412	182,758	19	63	15,458
25	양주	205,502	21,188	10	298,017	54,825	18	31	4,421
26	군포	186,219	25,506	14	267,428	48,806	18	52	4,480
27	춘천	357,027	46,844	13	476,607	86,032	18	31	11,544
28	원주	340,568	43,763	13	457,093	81,713	18	33	8,596
29	속초	165,213	18,794	11	188,749	33,518	18	26	4,235
30	김제	227,008	38,782	17	350,153	61,680	18	13	10,326
31	성남	915,455	132,439	14	1,331,380	228,914	17	72	16,867
32	순천	338,118	47,362	14	486,593	83,245	17	27	10,424
33	김해	517,391	53,729	10	740,159	126,008	17	41	12,879
34	강릉	434,280	40,184	9	426,818	72,486	17	26	7,767
35	제천	306,074	30,204	10	355,879	60,394	17	20	6,833
36	고양	615,690	73,806	12	871,405	147,694	17	62	13,341
37	남원	228,186	31,748	14	335,765	56,886	17	11	7,735
38	공주	263,300	29,468	11	336,500	56,983	17	19	5,577
39	영주	242,000	31,331	13	316,000	52,155	17	19	6,361
40	포항	529,100	71,890	14	806,900	132,078	16	49	18,642
41	안성	252,542	28,637	11	339,124	55,493	16	35	5,115
42	밀양	231,734	30,064	13	299,392	48,724	16	22	5,881
43	사천	210,512	25,452	12	310,976	50,032	16	20	5,856
44	안동	366,500	54,138	15	494,400	79,490	16	15	9,299
45	서산	267,918	30,448	11	327,846	52,051	16	35	5,422
46	여수	479,113	58,676	12	611,466	96,602	16	30	13,200
47	나주	309,843	35,523	11	355,373	56,122	16	11	8,193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48	파주	349,303	34,023	10	487,190	76,187	16	42	6,381
49	동영	240,130	18,838	8	312,757	48,879	16	20	6,085
50	동해	181,823	18,125	10	206,246	32,182	16	21	3,608
51	구미	327,902	37,294	11	487,391	74,866	15	48	8,304
52	영천	232,570	29,630	13	310,674	47,699	15	20	7,149
53	충주	343,004	38,477	11	443,036	66,925	15	21	7,347
54	광양	222,697	23,240	10	296,548	44,510	15	47	4,036
55	보령	281,414	35,129	12	329,134	49,239	15	24	6,291
56	거제	275,175	28,185	10	341,173	50,943	15	38	4,279
57	김천	262,600	34,689	13	351,200	52,185	15	24	6,608
58	경주	400,430	42,915	11	558,000	81,197	15	28	9,522
59	아산	351,308	37,397	11	429,060	61,960	14	50	6,823
60	오산	138,990	14,621	11	253,133	36,444	14	54	2,148
61	평택	418,371	44,890	11	682,806	98,109	14	47	10,045
62	창원	456,333	43,842	10	634,646	89,140	14	58	6,294
63	과천	185,856	17,020	9	192,453	26,881	14	48	821
64	화성	395,155	28,239	7	675,830	93,675	14	63	4,644
65	하남	171,963	21,093	12	208,915	28,715	14	41	2,013
66	광주	254,747	23,155	9	363,333	47,948	13	59	3,437
67	문경	244,943	22,315	9	272,200	34,671	13	16	5,031
68	이천	259,401	29,340	11	446,048	56,532	13	38	4,131
69	태백	187,729	15,113	8	182,102	22,237	12	27	1,902
70	양산	263,230	25,655	10	475,086	57,404	12	46	5,224
71	삼척	287,998	18,931	7	285,836	32,776	11	15	3,912
72	상주	271,868	23,423	9	397,359	41,716	10	12	4,693
73	김포	242,621	24,390	10	403,333	41,540	10	45	3,111
74	용인	785,817	46,942	6	1,125,510	115,461	10	64	5,849

(4) 군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기장	140,151	16,930	12	198,612	36,640	18	34	3,192
2	연기	163,469	28,870	18	231,074	42,565	18	23	4,094
3	달성	194,000	23,346	12	269,000	49,037	18	33	4,549
4	완주	195,069	31,237	16	277,305	50,353	18	21	5,577
5	칠곡	173,080	22,436	13	239,545	43,206	18	30	4,199
6	순창	129,452	15,880	12	186,580	32,989	18	9	2,019
7	음성	187,491	25,236	13	253,984	43,946	17	25	2,871
8	울주	253,129	41,641	16	329,191	56,346	17	50	3,304
9	담양	157,441	16,063	10	217,677	36,365	17	13	3,481
10	가평	168,730	23,286	14	226,524	36,432	16	24	2,549
11	서천	156,071	22,469	14	230,611	36,993	16	12	3,372
12	함안	166,423	16,382	10	202,108	32,336	16	22	3,164
13	청원	280,700	35,153	13	323,459	51,154	16	30	3,965
14	옥천	161,607	21,118	13	211,880	32,783	15	15	2,407
15	금산	177,491	19,152	11	197,262	29,300	15	23	3,642
16	영광	175,922	24,750	14	214,695	31,542	15	20	5,059
17	남해	170,725	17,611	10	211,002	30,839	15	14	3,096
18	부여	221,647	27,445	12	269,903	39,171	15	14	4,499
19	홍천	182,534	17,807	10	227,038	32,731	14	16	2,586
20	울진	186,700	23,421	13	216,550	30,481	14	21	4,799
21	횡성	142,815	14,696	10	189,236	26,520	14	13	2,194
22	영양	179,557	18,038	10	237,780	33,060	14	12	3,670
23	고성	180,560	17,830	10	216,042	29,905	14	13	2,541
24	산청	162,811	13,950	9	204,522	28,106	14	12	2,745
25	구례	110,687	12,260	11	166,394	22,849	14	11	2,553
26	창녕	162,526	22,878	14	224,960	29,864	13	15	3,750
27	해남	242,650	28,704	12	322,433	42,604	13	11	5,167
28	무안	175,503	21,279	12	232,391	30,249	13	10	3,739
29	거창	180,120	17,098	9	248,907	32,074	13	14	3,478
30	장성	165,483	19,448	12	208,300	26,841	13	14	3,810
31	합천	183,308	21,185	12	247,647	31,470	13	13	3,000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32	홍성	183,183	24,539	13	277,695	35,221	13	15	3,196
33	인제	138,523	11,901	9	199,370	25,205	13	13	1,494
34	양평	216,892	22,148	10	282,488	35,263	12	19	3,262
35	여주	228,462	22,097	10	303,424	37,795	12	40	3,855
36	강화	180,208	16,264	9	273,557	33,945	12	14	2,890
37	진도	165,647	14,222	9	219,066	27,079	12	13	3,451
38	하동	181,937	22,637	12	257,600	31,709	12	15	3,649
39	함평	135,303	14,818	11	209,297	25,679	12	11	3,206
40	함양	171,291	16,629	10	233,223	28,606	12	11	2,782
41	단양	172,142	15,378	9	180,735	22,115	12	21	1,953
42	고창	212,598	21,435	10	312,378	38,079	12	8	4,326
43	부안	212,247	22,004	10	286,649	34,553	12	10	5,498
44	화순	227,910	15,538	7	294,315	35,203	12	26	4,820
45	진천	139,562	13,036	9	182,022	21,474	12	29	2,186
46	양양	136,488	14,875	11	164,696	19,167	12	17	1,856
47	예산	180,230	17,630	10	255,794	29,725	12	16	3,780
48	정선	215,627	14,225	7	222,287	25,539	11	21	1,608
49	의성	206,746	17,054	8	268,805	30,705	11	9	3,604
50	곡성	133,088	13,783	10	181,279	20,692	11	10	2,831
51	완도	199,134	21,354	11	298,012	33,762	11	10	4,642
52	괴산	166,411	16,794	10	204,534	23,157	11	12	2,612
53	영덕	160,810	16,502	10	209,808	23,660	11	13	3,709
54	고령	119,454	9,994	8	168,525	18,908	11	15	2,315
55	의령	150,008	11,745	8	190,546	21,135	11	14	1,764
56	청도	138,411	14,145	10	189,000	20,749	11	11	2,625
57	예천	144,466	14,919	10	223,317	24,046	11	12	3,389
58	철원	136,197	14,694	11	188,980	20,217	11	12	2,172
59	증평	79,785	8,411	11	123,044	13,087	11	17	1,213
60	고흥	223,431	28,847	13	371,858	39,548	11	9	6,506
61	장흥	193,120	17,519	9	246,289	26,092	11	10	3,883
62	당진	223,616	21,871	10	321,159	33,385	10	30	3,403
63	청송	144,696	10,051	7	171,511	17,655	10	15	2,374
64	영양	138,374	10,191	7	166,650	17,005	10	9	2,233
65	무주	116,820	13,460	12	176,434	17,969	10	12	1,907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66	태안	181,144	13,826	8	209,973	21,364	10	21	2,267
67	강진	148,511	14,780	10	228,027	22,867	10	9	3,044
68	고성	143,242	9,357	7	186,021	18,556	10	14	1,690
69	신안	207,117	19,857	10	294,805	29,354	10	9	3,331
70	보은	149,478	15,310	10	197,107	19,323	10	12	2,080
71	영월	164,353	10,749	7	212,408	20,746	10	12	1,795
72	봉화	140,278	13,042	9	205,791	19,855	10	7	2,774
73	양구	121,020	7,962	7	182,238	17,551	10	18	1,413
74	영동	188,511	14,847	8	238,973	22,973	10	15	2,864
75	보성	177,985	14,176	8	270,479	25,950	10	8	3,540
76	성주	135,491	11,248	8	179,370	17,138	10	16	2,086
77	화천	114,160	10,752	9	160,232	15,164	9	13	1,742
78	평창	167,729	9,331	6	202,156	19,001	9	16	1,781
79	진안	145,517	10,569	7	186,368	17,447	9	11	2,103
80	연천	222,761	14,181	6	261,884	23,412	9	29	2,891
81	응진	100,628	4,780	5	154,386	13,726	9	28	381
82	청양	142,038	9,660	7	179,804	15,870	9	11	1,452
83	임실	158,805	10,947	7	211,130	18,477	9	10	2,405
84	장수	121,144	10,517	9	177,313	15,227	9	9	1,976
85	군위	115,260	7,675	7	153,022	12,035	8	17	1,604
86	울릉	83,490	4,389	5	114,987	6,762	6	15	446

라. 가용재원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순위(전체)

(1) 서울시 자치구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노원구	79,878	82,170	103	98,769	136,867	139	29	21,174
2	강서구	91,549	72,386	79	84,841	107,533	127	38	19,068
3	관악구	66,881	52,490	78	76,676	79,744	104	28	9,696
4	강북구	73,954	43,958	59	83,470	78,410	94	30	9,769
5	도봉구	79,343	42,666	54	64,194	59,496	93	35	4,715
6	금천구	65,156	29,010	45	65,187	58,785	90	33	7,284
7	중랑구	79,369	41,693	53	94,615	81,450	86	30	10,021
8	은평구	83,330	43,975	53	93,192	79,865	86	33	8,981
9	성북구	87,820	40,033	46	83,857	70,721	84	39	8,025
10	양천구	80,649	44,663	55	89,486	70,284	79	53	6,947
11	성동구	77,139	47,294	61	76,656	59,924	78	40	7,294
12	마포구	87,800	42,741	49	90,678	68,433	75	52	6,098
13	구로구	82,670	45,246	55	86,734	63,419	73	43	6,626
14	광진구	68,305	29,264	43	71,029	51,882	73	40	4,892
15	영등포구	88,226	33,940	38	104,171	75,373	72	67	8,228
16	동대문구	76,253	37,141	49	89,834	63,985	71	37	8,091
17	서대문구	63,551	33,777	53	85,673	60,887	71	40	5,693
18	송파구	101,568	37,944	37	108,423	75,758	70	75	5,645
19	강동구	71,215	32,707	46	86,873	59,028	68	49	5,706
20	동작구	87,621	44,733	51	89,209	58,579	66	42	5,933
21	용산구	63,827	31,861	50	86,008	50,611	59	53	3,944
22	중구	57,747	23,840	41	69,771	37,797	54	83	3,949
23	종로구	50,343	24,743	49	67,431	32,869	49	70	3,036
24	강남구	144,524	52,953	37	203,664	93,120	46	88	8,195
25	서초구	115,829	35,264	30	128,253	57,129	45	91	2,883

(2) 광역시 자치구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부산서구	25,809	36,426	141	22,290	54,442	244	14	6,252
2	부산동구	18,849	26,567	141	17,878	43,572	244	20	7,766
3	부산북구	34,606	47,538	137	38,909	94,188	242	14	15,852
4	부산사하구	42,227	47,354	112	35,072	81,039	231	24	13,887
5	부산금정구	38,178	37,946	99	31,610	71,681	227	20	8,272
6	부산해운대구	43,143	46,234	107	44,581	94,299	212	29	14,163
7	부산사상구	28,569	34,697	121	31,647	65,798	208	25	11,366
8	부산남구	34,090	28,474	84	26,117	52,490	201	24	8,015
9	광주북구	55,470	66,185	119	58,607	117,439	200	17	22,039
10	부산진구	45,118	44,924	100	40,617	75,017	185	32	13,910
11	부산연제구	26,774	26,563	99	24,516	45,025	184	28	6,466
12	부산영도구	29,835	27,693	93	27,557	49,981	181	16	8,348
13	대구동구	48,882	51,447	105	55,738	99,763	179	21	13,213
14	광주광산구	39,072	45,989	118	47,357	82,688	175	21	11,357
15	광주남구	32,364	31,438	97	37,731	62,316	165	18	8,168
16	광주서구	43,849	43,149	98	45,149	74,523	165	23	11,032
17	대구북구	50,073	51,682	103	67,574	99,516	147	24	14,171
18	대구달서구	75,037	69,516	93	80,426	118,134	147	32	22,930
19	인천연수구	33,532	34,547	103	44,479	63,673	143	26	7,328
20	대전동구	47,884	44,499	93	54,878	78,319	143	18	12,351
21	인천부평구	57,945	62,525	108	83,450	117,572	141	27	15,805
22	광주동구	31,592	27,967	89	31,453	44,308	141	17	5,617
23	부산동래구	33,246	22,562	68	31,737	43,229	136	27	5,599
24	인천남구	56,265	46,288	82	58,546	79,276	135	26	9,905
25	부산수영구	23,007	14,462	63	24,823	33,453	135	26	4,618
26	인천계양구	32,598	22,546	69	44,258	58,091	131	25	5,834
27	울산중구	26,899	23,574	88	34,107	43,720	128	19	6,289
28	대전대덕구	46,839	35,387	76	45,657	58,351	128	21	7,065
29	대전중구	50,046	34,962	70	53,123	67,825	128	23	10,919
30	대구서구	35,127	30,672	87	39,330	49,998	127	26	9,474
31	대전서구	74,415	42,334	57	70,761	89,841	127	29	10,099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32	대구수성구	58,347	57,354	98	77,965	96,183	123	39	15,498
33	대전남구	26,476	26,001	98	39,093	47,697	122	19	7,452
34	인천동구	24,636	15,090	61	26,182	29,779	114	28	3,306
35	부산중구	21,278	8,014	38	15,433	16,138	105	29	2,387
36	인천서구	64,049	36,288	57	75,243	78,355	104	33	8,052
37	인천남동구	60,654	35,102	58	75,254	76,971	102	37	11,215
38	울산북구	31,266	14,770	47	29,629	29,774	100	38	1,678
39	부산강서구	34,391	16,688	49	32,577	30,593	94	30	2,313
40	울산동구	28,092	14,100	50	30,710	25,452	83	34	2,469
41	대전유성구	47,191	19,244	41	52,544	41,879	80	40	3,163
42	대전중구	30,840	15,009	49	38,413	28,599	74	31	3,771
43	울산남구	46,210	23,724	51	60,141	42,750	71	36	4,759
44	인천중구	46,212	17,637	38	50,435	30,116	60	44	3,148

### (3) 시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익산	157,518	82,795	53	243,842	135,975	56	33	17,597
2	안산	264,215	74,779	28	289,197	156,196	54	59	16,955
3	전주	227,058	104,309	46	377,314	197,040	52	32	24,579
4	경읍	113,570	51,125	45	161,303	79,206	49	17	11,293
5	동두천	47,088	17,893	38	76,786	36,198	47	23	2,989
6	목포	115,821	59,949	52	216,276	100,337	46	23	12,618
7	김제	81,011	38,782	48	137,893	61,680	45	15	10,326
8	논산	90,715	36,792	41	155,821	68,689	44	21	7,645
9	군산	166,255	66,035	40	239,376	105,297	44	27	16,006
10	청주	270,413	98,674	36	400,646	170,573	43	53	15,860
11	남원	64,870	31,748	49	135,025	56,886	42	21	7,735
12	안양	245,370	61,483	25	305,456	127,526	42	64	8,106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3	의정부	169,743	38,391	23	217,034	88,786	41	49	10,733
14	통영	80,379	18,838	23	119,730	48,879	41	24	6,085
15	광명	138,024	40,536	29	172,679	70,164	41	48	5,639
16	구리	91,307	23,038	25	122,431	49,589	41	45	4,921
17	진해	85,102	28,168	33	117,560	47,320	40	34	3,671
18	포천	98,039	28,601	29	149,974	59,825	40	33	5,400
19	춘천	148,296	46,844	32	226,975	86,032	38	33	11,544
20	경산	118,236	40,651	34	193,734	73,194	38	25	9,120
21	양주	85,180	21,188	25	146,077	54,825	38	35	4,421
22	속초	86,061	18,794	22	91,730	33,518	37	30	4,235
23	시흥	161,082	33,189	21	227,787	82,770	36	56	5,937
24	여수	223,231	58,676	26	270,598	96,602	36	31	13,200
25	진주	142,968	49,734	35	283,397	100,461	35	45	12,085
26	영주	88,163	31,331	36	148,251	52,155	35	19	6,361
27	밀양	99,866	30,064	30	139,222	48,724	35	20	5,881
28	부천	361,285	86,545	24	456,535	159,445	35	59	15,900
29	안동	150,387	54,138	36	230,238	79,490	35	22	9,299
30	나주	93,242	35,523	38	162,789	56,122	34	21	8,193
31	천안	258,167	61,144	24	339,775	116,733	34	43	9,748
32	동해	66,958	18,125	27	93,762	32,182	34	22	3,608
33	사천	73,615	25,452	35	146,002	50,032	34	24	5,856
34	공주	107,068	29,468	28	166,301	56,983	34	29	5,577
35	마산	201,439	64,224	32	334,106	114,370	34	40	10,789
36	제천	122,838	30,204	25	177,793	60,394	34	21	6,833
37	안성	93,480	28,637	31	163,842	55,493	34	32	5,115
38	순천	156,293	47,362	30	246,987	83,245	34	28	10,424
39	수원	507,802	100,016	20	544,980	182,758	34	63	15,458
40	남양주	152,188	36,990	24	282,521	94,422	33	43	7,729
41	파주	163,302	34,023	21	228,569	76,187	33	42	6,381
42	서산	128,383	30,448	24	158,218	52,051	33	34	5,422
43	영천	95,536	29,630	31	145,563	47,699	33	34	7,149
44	원주	150,497	43,763	29	249,559	81,713	33	32	8,596
45	김해	270,516	53,729	20	388,645	126,008	32	32	12,879
46	하남	83,803	21,093	25	88,847	28,715	32	43	2,013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47	군포	98,696	25,506	26	151,773	48,806	32	55	4,480
48	강릉	239,617	40,184	17	230,950	72,486	31	28	7,767
49	의왕	70,432	19,197	27	111,064	34,715	31	45	1,323
50	보령	117,497	35,129	30	157,856	49,239	31	20	6,291
51	태백	63,656	15,113	24	71,791	22,237	31	21	1,902
52	광양	103,133	23,240	23	145,414	44,510	31	37	4,036
53	거제	124,140	28,185	23	172,157	50,943	30	37	4,279
54	창원	191,924	43,842	23	303,419	89,140	29	48	6,294
55	구미	177,118	37,294	21	255,323	74,866	29	43	8,304
56	평택	203,678	44,890	22	339,896	98,109	29	43	10,045
57	경주	191,480	42,915	22	286,202	81,197	28	29	9,522
58	포항	267,782	71,890	27	466,444	132,078	28	39	18,642
59	충주	137,822	38,477	28	237,144	66,925	28	21	7,347
60	김천	129,989	34,689	27	188,064	52,185	28	33	6,608
61	고양	396,686	73,806	19	537,035	147,694	28	61	13,341
62	아산	175,219	37,397	21	237,137	61,960	26	32	6,823
63	상주	85,437	23,423	27	161,373	41,716	26	15	4,693
64	광주	120,441	23,155	19	187,755	47,948	26	54	3,437
65	성남	646,193	132,439	20	904,363	228,914	25	69	16,867
66	문경	102,104	22,315	22	139,131	34,671	25	17	5,031
67	화성	205,025	28,239	14	385,224	93,675	24	59	4,644
68	삼척	122,817	18,931	15	137,503	32,776	24	14	3,912
69	이천	117,033	29,340	25	239,151	56,532	24	43	4,131
70	오산	63,718	14,621	23	168,695	36,444	22	49	2,148
71	김포	102,248	24,390	24	192,752	41,540	22	42	3,111
72	과천	107,969	17,020	16	127,642	26,881	21	43	821
73	양산	129,453	25,655	20	295,812	57,404	19	38	5,224
74	용인	497,118	46,942	9	768,391	115,461	15	58	5,849

(4) 군

(단위: 백만원, %, 명)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1	순창	41,280	15,880	38	70,829	32,989	47	9	2,019
2	완주	62,574	31,237	50	109,941	50,353	46	21	5,577
3	연기	57,472	28,870	50	95,343	42,565	45	23	4,094
4	서천	50,249	22,469	45	88,030	36,993	42	12	3,372
5	부산기장	76,718	16,930	22	90,799	36,640	40	34	3,192
6	영광	64,675	24,750	38	84,884	31,542	37	20	5,059
7	울산울주	133,634	41,641	31	154,843	56,346	36	50	3,304
8	담양	56,728	16,063	28	100,297	36,365	36	13	3,481
9	가평	63,367	23,286	37	104,763	36,432	35	24	2,549
10	음성	83,434	25,236	30	126,402	43,946	35	25	2,871
11	합천	57,685	21,185	37	90,769	31,470	35	13	3,000
12	산청	54,144	13,950	26	82,501	28,106	34	12	2,745
13	하동	64,234	22,637	35	93,231	31,709	34	15	3,649
14	강화	55,770	16,264	29	100,266	33,945	34	14	2,890
15	함안	75,861	16,382	22	97,267	32,336	33	22	3,164
16	부안	66,091	22,004	33	104,365	34,553	33	10	5,498
17	남해	69,890	17,611	25	93,719	30,839	33	14	3,096
18	옥천	60,726	21,118	35	99,858	32,783	33	15	2,407
19	칠곡	91,945	22,436	24	132,511	43,206	33	30	4,199
20	무안	57,278	21,279	37	93,783	30,249	32	10	3,739
21	고흥	70,727	28,847	41	123,052	39,548	32	9	6,506
22	달성	100,883	23,346	23	152,612	49,037	32	33	4,549
23	구례	29,784	12,260	41	71,854	22,849	32	11	2,553
24	함평	48,047	14,818	31	81,289	25,679	32	11	3,206
25	완도	66,127	21,354	32	106,878	33,762	32	10	4,642
26	청원	124,896	35,153	28	161,964	51,154	32	30	3,965
27	고창	64,120	21,435	33	121,262	38,079	31	8	4,326
28	해남	82,775	28,704	35	136,370	42,604	31	11	5,167
29	함양	68,244	16,629	24	91,882	28,606	31	11	2,782
30	화천	48,014	10,752	22	49,296	15,164	31	13	1,742
31	영암	59,087	18,038	31	107,582	33,060	31	12	3,670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32	부여	79,304	27,445	35	128,032	39,171	31	14	4,499
33	진도	57,032	14,222	25	88,578	27,079	31	13	3,451
34	창녕	66,850	22,878	34	97,950	29,864	30	15	3,750
35	금산	66,941	19,152	29	96,881	29,300	30	23	3,642
36	거창	53,473	17,098	32	107,988	32,074	30	14	3,478
37	정선	79,547	14,225	18	86,057	25,539	30	21	1,608
38	예산	61,346	17,630	29	100,523	29,725	30	16	3,780
39	고성	65,707	17,830	27	101,290	29,905	30	13	2,541
40	양평	62,594	22,148	35	119,883	35,263	29	19	3,262
41	울진	87,402	23,421	27	103,802	30,481	29	21	4,799
42	횡성	64,447	14,696	23	91,987	26,520	29	13	2,194
43	신안	72,047	19,857	28	101,987	29,354	29	9	3,331
44	장성	60,523	19,448	32	94,142	26,841	29	14	3,810
45	홍천	66,475	17,807	27	115,369	32,731	28	16	2,586
46	홍성	75,204	24,539	33	125,483	35,221	28	15	3,196
47	인제	60,371	11,901	20	91,992	25,205	27	13	1,494
48	태안	86,894	13,826	16	78,191	21,364	27	21	2,267
49	괴산	59,498	16,794	28	85,998	23,157	27	12	2,612
50	양양	59,581	14,875	25	71,218	19,167	27	17	1,856
51	고령	56,408	9,994	18	70,435	18,908	27	15	2,315
52	곡성	49,388	13,783	28	77,263	20,692	27	10	2,831
53	강진	44,405	14,780	33	86,431	22,867	26	9	3,044
54	장흥	61,617	17,519	28	100,111	26,092	26	10	3,883
55	영덕	60,330	16,502	27	90,838	23,660	26	13	3,709
56	의령	55,702	11,745	21	82,368	21,135	26	14	1,764
57	영동	64,022	14,847	23	90,448	22,973	25	15	2,864
58	화순	73,768	15,538	21	138,834	35,203	25	26	4,820
59	단양	65,211	15,378	24	88,006	22,115	25	21	1,953
60	청도	54,281	14,145	26	83,754	20,749	25	11	2,625
61	진안	50,571	10,569	21	70,581	17,447	25	11	2,103
62	양구	54,237	7,962	15	71,588	17,551	25	18	1,413
63	옹진	29,227	4,780	16	56,826	13,726	24	28	381
64	예천	59,970	14,919	25	100,099	24,046	24	12	3,389
65	고성	59,046	9,357	16	77,737	18,556	24	14	1,690



순위	지역명	2004			2007			2007	2007
		총세출 (A)	사회보장비 (B)	비율 (B/A)	총세출 (C)	사회보장비 (D)	비율 (D/C)	재정 자립도	기초 수급자
66	무주	49,994	13,460	27	76,286	17,969	24	12	1,907
67	의성	69,196	17,054	25	131,753	30,705	23	9	3,604
68	철원	49,453	14,694	30	87,092	20,217	23	12	2,172
69	보성	76,455	14,176	19	111,823	25,950	23	8	3,540
70	당진	110,108	21,871	20	144,303	33,385	23	30	3,403
71	영양	58,956	10,191	17	73,856	17,005	23	9	2,233
72	여주	94,650	22,097	23	165,599	37,795	23	40	3,855
73	청송	57,524	10,051	17	79,851	17,655	22	15	2,374
74	영월	62,517	10,749	17	93,876	20,746	22	12	1,795
75	보은	54,642	15,310	28	88,641	19,323	22	12	2,080
76	증평	32,521	8,411	26	60,463	13,087	22	17	1,213
77	봉화	52,786	13,042	25	91,758	19,855	22	7	2,774
78	장수	46,791	10,517	22	71,032	15,227	21	9	1,976
79	임실	69,240	10,947	16	86,477	18,477	21	10	2,405
80	진천	62,465	13,036	21	101,892	21,474	21	29	2,186
81	청양	57,674	9,660	17	78,942	15,870	20	11	1,452
82	성주	51,368	11,248	22	88,320	17,138	19	16	2,086
83	평창	68,373	9,331	14	102,523	19,001	19	16	1,781
84	연천	86,098	14,181	16	133,849	23,412	17	29	2,891
85	군위	54,672	7,675	14	71,684	12,035	17	17	1,604
86	울릉	30,895	4,389	14	47,026	6,762	14	15	446

## [경제현안분석 목록]

	제목	집필	발간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중	2005. 6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7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에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중	2006. 6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중	2007. 6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2007. 7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중률	2007. 7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제목	집필	발간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언	2008. 8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 이성규	2008. 9
31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2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3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4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41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 신영임	2009. 8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 신영임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
45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